

## 요양보호사교육원 운영 규정

제정 2020. 04. 24.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명칭)** 본 교육원은 상지대학교 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(이하 “교육원”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
**제2조(목적)** 교육원은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서 노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소재)** 교육원은 상지대학교 캠퍼스 내에 둔다.

### 제2장 조직

**제4조(원장)** ① 교육원에는 원장을 두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며,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통제하고,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**제5조(강사)** ① 교육원에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라 강사를 둔다.

② 강사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**제6조(교직원)** 교육원에는 원장의 명을 받아 교육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### 제3장 운영위원회

**제7조(구성)** ① 교육원의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,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.

**제8조(임기)**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9조(심의사항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·폐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**제10조(소집 및 의결)**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

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4장 교육과정

**제11조(교육과정)**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의한다.

**제12조(교육시간)** 교육시간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의한다.

## 제5장 등록 및 수강

**제13조(지원자격)** 교육원의 지원자격은 학력과 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14조(선발방법)** 교육생은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

**제15조(등록시기)** 교육원 등록 시기는 각 교육과정별 일정에 따라 정한다.

**제16조(교육비)** ① 교육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교육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학습비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.

**제17조(수료)** 교육원의 각 교육과정별 교육수료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의한다.

## 제6장 학생관리

**제18조(자치활동)** 원장은 교육기간 동안 교육생 중에서 회장과 총무를 선출하여 필요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.

**제19조(학생활동의 금지)**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수강을 불허할 수 있다.

1.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활동이나 기타 불온한 목적을 위하여 수강을 하는 경우
2. 집단행동, 농성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
3. 교육생으로서의 품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

**제20조(포상)** 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교육생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## 제7장 회계

**제21조(회계연도)**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상지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.

**제22조(예산편성 및 사업계획)** ① 원장은 매년 12월 중 다음해의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교육원의 교육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.

**제23조(결산 및 사업보고)** 원장은 교육원의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24조(수입원)**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교육생의 교육비
2. 대학 및 기타 보조금
3. 그 밖의 수입

## 제8장 보칙

**제25조(세부사항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팀-289, 2020.04.24.)

이 규정은 2020년 04월 24일부터 시행한다.